

『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
제 1 조 적용범위

“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(구 외환은행, 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 3 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상품명

이 예금의 상품명은 “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” 또는 “119생명지킴이 적금”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.

제 5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

제 6 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하며,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제 8 조의 우대금리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.
- ③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에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8 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(단, 최고 연1.1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
우대항목	내 용
주거래통장 우대 (최고 연0.1%)	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보유하거나 금리우대쿠폰 ^(주) 을 등록하는 경우 최고 연0.1% (주) 은행의 특정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함.
입금 주거래 우대	KEB하나은행 계좌로 연금 입금 또는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

<p>(최고 연0.2%)</p>	<p>경우 최고 연0.2%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기간중 3개월이상 이체 시 연0.1% - 계약기간중 6개월이상 이체 시 연0.2%
<p>결제 주거래 우대 (최고 연0.2%)</p>	<p>KEB하나은행 계좌에서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0.2% (항목당 연0.1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나카드 사용대금 결제 - 하나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-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-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출금 <p>(단, 예금 만기월 전전월부터 과거 3개월 기간동안 1회 이상 실적이 발생하고, 예금 만기시 유지하는 항목에 한하여 우대금리 제공함)</p>
<p>하나멤버스 우대 (최고 연0.3%)</p>	<p>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0.3% (항목당 연0.1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- 하나멤버스 App. 로그인 - 하나멤버스 마케팅 동의
<p>ISA우대 (연 0.3%)</p>	<p>이 예금 만기일 기준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를 보유한 경우 연0.3%</p>

②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하며,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.

<부칙1>

본 약관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칙2>

본 약관은 2016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<부칙3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